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2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,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(안 제6조)
- 나. 보훈예우수당 대상 변경 및 타 조례 중복조항 삭제(안 제8조)
- 다. 위문금 지급 대상의 변경(안 제9조)
- 라. 참전명예수당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19. 8. 1. ~ 8. 21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 - 3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9.3.)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- 7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8) 비용추계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.

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독립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금 지급

제6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

제7조의 제목 “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”을 “(사망위로금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두고 실제 거주한”을 “둔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”을 “(보훈예우수당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”로, “두고, 실제 거주하는”을 “둔”으로, “수당”을 “보훈수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수당을”을 “보훈수당을”로, 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수당”을 “보훈수당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위문금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에게는 광복절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제6호에 따른 단체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참전명예수당) ① 구청장은 제3조제7호의 참전유공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참전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참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[illegible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 훈단체로 한다.	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(생 략)	7. (현행 제3호와 같음)
4. ~ 7. (생 략)	3. ~ 6. (현행 제4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)
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 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 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예산지원)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</u>	7. <u>독립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 문금 지급</u>
<u><신 설></u>	8. <u>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</u>
8. · 9. (생 략)	9. · 10. (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)
제7조(사망위로금 지급 · 신청)	제7조(사망위로금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

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

③ -----
----- 둔 -----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보훈예우수당) ① -----

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-----

----- 둔 -----
----- " -----
보훈수당"-----
-----.

②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보훈수당을 -----
-- 별지 제2호서식의 -----

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제9조(위문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, 호국·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제8조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위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-----.

④ 보훈수당-----
-.

제9조(위문금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에게는 광복절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제6호에 따른 단체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참전명예수당) ① 구청장은 제3조제7호의 참전유공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참전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참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

제10조 ~ 제12조 (생략)

<별지 2호서식>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					처리기간	
					30일	
보훈 대상자	성명				지급 대상유형	보훈대상자
	생년월일					
	주소					
연락처				마포구 전입일자		
예금 계좌	계좌번호					
	금융기관명			예금주		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위문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						
<구비서류> 1.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						수수료
						없음
본 신청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위문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.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	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
야 한다.

제11조 ~ 제13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

<별지 2호서식>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					처리기간	
					30일	
보훈 대상자	성명				지급 대상유형	보훈대상자
	생년월일					
	주소					
연락처				마포구 전입일자		
예금 계좌	계좌번호					
	금융기관명			예금주		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						
<구비서류> 1.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						수수료
						없음
본 신청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.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	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마포구 위문금 중 참전유공자 조정분을 참전명예수당 증가분에 상쇄

나. 월 2만원~5만원,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비용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1년차 (1,450명)	2년차 (1,400명)	3년차 (1,350명)	4년차 (1,300명)	5년차 (1,250명)	비고
소요 예산	2만원	218,000	210,000	202,500	195,000	187,500	구비 100%
	3만원	391,500	378,000	364,500	351,000	337,500	
	4만원	565,500	546,000	526,500	507,000	487,500	
	5만원	739,500	714,000	688,500	663,000	637,500	
위문금삭제 절감효과		△130,500	△126,000	△121,500	△117,000	△112,500	

※ 소요예산은 신설되는 참전명예수당 비용에서 삭감되는 참전유공자 위문금 비용을 제외한 실제 소요금액임.

4. 작성자 :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박일아 (☎ 3153-8807)